

「구미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2. 제안이유

- 기금 조성 재원을 확대하고,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11조제1항에 의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을 변경하며,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2023. 01. 01. 시행)에 따라 기금 관련 공무원 직명을 현행화함으로써 구미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기금의 건실한 운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기금 조성 재원 확대 (안 제2조제1호)
- 위원회 구성 변경 (안 제4조제3항제1호)
- 기금관련 공무원 직명 현행화 (안 제4조제4항, 제10조제1항제2호)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경상북도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구미시 실무직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합 의 : 정책기획과,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
-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 구미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기금 조성 재원을 확대하고, 타 조례에 맞추어 내용을 일부 수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 검토 결과,

-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기금은 1995년 최초 조성하여 기금 이자 수입만으로 장학금 지급가능할 때까지 적립하여, 2018년 조성목표액 20억 원을 달성하였음. 매년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을 상·하반기에 지급하여 구미시를 위해 봉사하며 지역을 가꾸는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있음.
-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기금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원확보를 위하여 도비 보조금을 기금 재원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